

석유판매업(주유소) [] 등록신청서
[] 조건부 등록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

접수일자

처리기간

7일

신청인

대표자 성명

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

주소

상호

전화번호

사업자등록번호(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)

주된 영업소의 소재지

보유 시설

저장시설

소재지

용량

kl(개)

주유기 수(대)

부지면적(㎡)

기타

취급 유종

사업개시 예정일

년

월

일

기타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0조제1항·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·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(주유소) []등록 []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

월

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
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수수료
1.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(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) 1부 2. 주유기 명세서 1부 3.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	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

처리절차

